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9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2.

복지문화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2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어르신장애인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1. 23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. 23.(목)
- 검토기간: 2025. 1. 23.(목) ~ 2. 3.(월)

2. 제안이유

-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·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명칭 및 위치(안 제2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5년 7월말 준공예정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,
-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통

계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현재 인구비율은 60세 이상 25.4%, 70세 이상 10.4%에서 2024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28.3%, 70세 이상 12.0%로 전체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달서구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

(단위: 명, %)

구분	총인구수	60세 이상	70세 이상	비고
2022. 12월	536,989	136,231 25.4%	56,028 10.4%	
2023. 12월	527,781	141,325 26.8%	59,026 11.2%	
2024. 12월	522,021	147,566 28.3%	62,470 12.0%	

※ 출처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(<https://jumin.mois.go.kr/>)

- 이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그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,
- 다만,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및 보건복지부 「2024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」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시설기준과 최소 직원기준을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- 시설기준

구분	사무실	식당 및 조리실	상담실 또는 면회실	집회실 또는 강당	프로 그램실	화장실	물리 치료실	방사선 대사실	거실 또는 휴게실
노인복지관	1	1	1	1	1	1	1	1	1

※ 출처: 「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」 1권, 132쪽

관계법령

□ 노인복지법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